2. 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369

발의년월일 : 2022. 7. 21.
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 운 영 위 원 장

1. 개정이유

○ 조례에서 정한 관계공무원의 사고 발생시, 일부 기관(부서)에서 의회(위원회)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는 상태가 발생

○ 이에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확보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(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)
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내용 중 “출석.답변”을 “출석·답변”으로 하며, 제8호 중 “실.과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한다.

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.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7. (생 략) 8. 제5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.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<신 설>	제2조(범위)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실·과장---------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